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의5서식] <개정 2021. 12. 31.>

(앞쪽)

제 호

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

(□ 운전자용 □ 동승보호자용)

교육확인
누름도장

교육 이수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 :)		
이수 과정	과정명		이수일자	
차기 교육기간	년 1월 31일 ~ 년 12월 31일			

위의 사람에 대하여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경찰청 로고 **도로교통공단 이사장** 직인 도로교통공단 로고

(주)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인과 로고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용: 105㎜×152㎜[인쇄용지(특급) 120g/㎡]

(뒤쪽)

유 의 사 항

1.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2.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3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에 안전교육 확인증을 비치해야 합니다.
3.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려는 경우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려는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